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60
----------	-------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자 : 서지영 · 김대식 · 서천호

박성훈 · 정성국 · 이종배

이헌승 · 조승환 · 이인선

김성원 · 구자근 · 박수민

조경태 의원(13인)

제안이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여론 형성, 비대면 소통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여론을 비판적으로 판별·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비대면·무인화 흐름이 일상생활에 폭넓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술·기기 접근성 차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비대면 소통 증가로 인한 사이버 폭력, 허위뉴스의 확산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됨에 따라 지역·계층 격차 및 생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미

디어교육을 분산하여 실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 주관기관으로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교육의 체계적·종합적 실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 촉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미디어교육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시행기관으로 함(안 제8조).

다. 주관기관은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기관은 매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미디어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 촉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

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마.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및 같은 조 제12호의2
에 따른 온라인비디오물

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용자가 직접 생성하거나 선택한 정보(부호
· 문자 · 음성 · 화상 또는 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공유 ·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그 밖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
또는 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
한 접근 · 활용능력, 이해 · 비평능력을 향상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참여, 소통 능력 및 시민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미디어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콘
텐츠의 제작 · 유통 · 이용 · 제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미디어교육의 기본원칙) ① 미디어교육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미디어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미디어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미디어사업자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미디어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미디어교육 주관기관 등) ① 이 법에 따른 미디어교육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가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미디어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주관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의 기본방향
2. 미디어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문화의 다양성 확산에 관한 사항
3. 미디어에 대한 접근·활용능력, 이해·비평능력 및 미디어 윤리에 관한 사항
4. 미디어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
9. 미디어교육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0. 미디어교육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 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11. 미디어교육 관련 민관협업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미디어
교육 촉진에 관한 사항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3. 미디어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미디어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행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0조에 따른 미디어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미디어교육위원회) ①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미디어교육 평가 지침 마련 등 평가에 관한 사항
4.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정책의 소관 조정 및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의 조정·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제13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3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각 1명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①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의 종합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1항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디어교육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시기·방법, 평가 결과 공개의 대상·방법 및 미디어교육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및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또는 미디어교육 관련 민간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